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11. 26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주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11월 17일
-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선거 관련 교육을 추가하고,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학생자치 활성화와 민주시민학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(안 제3조)
- 교육감 등의 책무(안 제4조)
-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·구성·운영(안 제6조~제8조)
-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(안 제9조)
- 민주학교 선정·운영(안 제10조)
- 시행규칙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선거 관련 교육을 추가하고,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, 학생 및 학부모자치 활성화와 민주시민학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3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,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,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에 설치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- 안 제9조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정하면서 선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,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민주학교를 선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최근 우리사회에서 공동체적 삶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,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선거권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 강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교육대상 확대 및 「공직선거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